

보도시점 (온라인) 2026. 1. 29.(목) 12:00
(지 면) 2026. 1. 30.(금) 조간

자동차세 연납 2월 4일 마감, 5% 공제 혜택 챙기세요!

- 전국 지방정부 동시 마감, 위택스·모바일 등 비대면 납부 가능
- 지방세 신고·납부기한: (당초) 2월 2일 → (변경) 2월 4일

- 행정안전부(장관 윤호중)는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기한이 2월 4일(수)로 연장·마감됨에 따라, 자동차세를 연납할 의사가 있는 자동차 소유자께서는 기한 내에 신청해서 공제 혜택을 잘 챙길 것을 당부했다.
 -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.
 - 올해 1월에 연납할 경우, 1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(2월~12월)에 대해 5% 공제율이 적용되어, 결과적으로 연간 세액의 4.58%를 할인 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.
 -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관할 시·군·구청 방문 또는 위택스 누리집 (www.wetax.go.kr),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다. 서울 특별시는 위택스와 이택스(etax.seoul.go.kr)를 통해 가능하다.
 - 당초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는 2월 2일(월)까지 가능했으나, 2월 4일(수)까지로 연장되었다.
 - 행정구역 개편사항* 반영 작업을 위해 1월 30일(금)~2월 1일(일) 중 위택스 서비스가 중단**됨에 따라, 이로 인해 납부에 영향을 받는 모든 지방세 세목에 대해 신고·납부기한을 2월 4일로 연장한다.
- * 2.1.(일) 경기도 화성시 일반구 4개 신설 관련 변경사항
- ** '26.1.30(금) 19시~2.1.(일) 19시(단, 기 신청·신고·부과분 납부는 2.1(일) 0시 30분 조기 재개)
- ※ 1.30(금)~2.3(화) 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지방세의 신고·납부 기한이 2.4(수)로 연장

- 한편, 자동차세 연납은 정기분과 달리 자동이체가 적용되지 않는 만큼, 기존에 자동이체를 설정해 둔 납세자라도 반드시 2월 4일까지 직접 납부 과정을 거쳐야 한다.
- 만약 연납으로 세금을 낸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할 경우, 보유하지 않은 기간만큼의 세금은 일할 계산되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.
- 또한, 다른 지방정부로 이사를 하더라도 당해연도 자동차세를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다.
-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“국민생활과 밀접한 자동차에 대한 세액 절감 제도를 잘 활용하시기 바란다”며 “앞으로도 국민이 지방세 신고·납부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지방재정경제실 부동산세제과	책임자	과 장	서은주 (044-205-3831)
		담당자	사무관	나병진 (044-205-3843)
	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입정보과	책임자	과 장	한송희 (044-205-3661)
		담당자	사무관	김병윤 (044-205-3662)